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32
----------	------

2022년 2월 1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월 19일, 김정환 의원 외 23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년 2월 11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수도요금 인상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수도요금 감면을 추가적으로 연장 시행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골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수도요금 감면 시기를 2022년 6월 납기분까지 연장함(안 제31조제1항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11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재효)

가.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수도요금(상수도요금) 감면 적용기한을 금년 6월 납기분까지로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지난 제300회 임시회 시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6개월¹⁾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50%)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지난해 6개월간 252,833개 수전에 대해 270억 8천6백만원²⁾의 수도요금을 감면한 바 있음.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현황(‘21.7 ~ 12월)〉

건 수	감면금액	일반회계 보전금액	비 고
252,833수전	27,086백만원	17,888백만원	직권 250,811수전 신청 2,022수전 ³⁾

-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수도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강화(‘21.12.16) 되었고 상당 기간 지속되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서울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연장 등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을 증액⁴⁾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⁵⁾한 바 있음.

1) 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적용

2) 감면 추진 당시 257천 수전을 대상으로 280억원 감면 규모 예상

3) 신청대상 수전수(9,359개) 대비 22%

4) 6개월 수도요금 감면 연장을 위해 330억원 편성(일반회계(소상공인정책담당관)

따라서 동 조례안은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연장('22.1 ~ 6월)을 위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 감면 연장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동 조례안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급수업종은 일반용과 욕탕용이지만, 2022년 1월부터 급수업종 중 공공용이 일반용에 통합됨에 따라 기존 월 300^{m³} 이하를 사용하는 공공기관⁶⁾까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바, 동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정에 단서⁷⁾를 추가하여 공공성을 가진 공공기관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5)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22.1월)

6) “기존 공공용” 급수업종에서 300^{m³} 이하 사용자 현황

구 분	계	공공시설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종교단체	준공업지역 공장	기타 및 미분류
개 소 (구성비%)	14,508 (100)	2,383 (16.4)	676 (4.7)	331 (2.3)	2,391 (16.5)	194 (1.3)	8,529 (58.8)
월평균 사용량(^{m³})	49.1	53.7	115.0	130.5	46.0	82.7	37.9

7) “다만, 300^{m³} 이하 수도사용자 중 2021년 12월 31일 당시 급수업종이 공공용이었던 경우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급수업종 통합에 따라 월 300 m^3 이하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하고자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32
----------	------------

제안년월일: 2022년 2월 11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일부개정조례안 금년 1월부터 공공용이 일반용으로 급수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월 $300m^3$ 이하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월 $300m^3$ 이하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소상공인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안 제31조제1항제8호)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세제곱미터 이하 수도 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2년 1월 납기분부터 6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옥탕용에 한해 적용) 다만, 300세제곱미터 이하 수도사용자 중 2021년 12월 31일 당시 급수업종이 공공용이었던 경우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u>300톤</u>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u>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옥탕용에 한해 적용</u>)</p> <p>9. (생략)</p>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 ----- ----- -----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u>300톤</u> ----- ----- -----<u>2022년</u> <u>1월 납기분부터 6월</u> ----- -----</p> <p>9. (현행과 같음)</p>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 ----- ----- ----- ----- ----- ----- ----- ----- -----.</p> <p>1. ~ 7. (개정안과 같음)</p> <p>8. ----- ----- <u>300세제곱</u> <u>미터</u> ----- ----- -----<u>2022년 1월 납기분</u> <u>부터 6월</u> ----- ----- ----- <u>다만, 300세제곱</u> <u>미터 이하 수도사용자</u> <u>중 2021년 12월 31일</u> <u>당시 급수업종이 공공</u> <u>용이었던 경우에는</u> <u>「소상공인기본법」 제</u> <u>2조에 따른 소상공인</u> <u>에 한한다.</u></p> <p>9.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세제곱미터 이하 수도 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2년 1월 납기분부터 6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다만, 300세제곱미터 이하 수도사용자 중 2021년 12월 31일 당시 급수업종이 공공용이었던 경우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감면의 적용례) 제3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납기분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u>300톤</u> 이하 수도 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 (<u>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옥탕용에 한해 적용</u>)</p> <p>9. (생략)</p>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 ----- -----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u>300세제</u> <u>제</u> <u>급</u> <u>미</u> <u>터</u> ----- ----- <u>2022년 1월 납기분부터 6월</u> ----- ----- <u>다만, 300세제</u> <u>급</u> <u>미</u> <u>터</u> <u>이</u> <u>하</u> <u>수</u> <u>도</u> <u>사</u> <u>용</u> <u>자</u> <u>중</u> <u>2021</u> <u>년</u> <u>12</u> <u>월</u> <u>31</u> <u>일</u> <u>당</u> <u>시</u> <u>급</u> <u>수</u> <u>업</u> <u>종</u> <u>이</u> <u>공</u> <u>공</u> <u>용</u> <u>이</u> <u>었</u> <u>던</u> <u>경</u> <u>우</u> <u>에</u> <u>는</u> <u>「</u> <u>소</u> <u>상</u> <u>공</u> <u>인</u> <u>기</u> <u>본</u> <u>법</u> <u>」</u> <u>제</u> <u>2</u> <u>조</u> <u>에</u> <u>따</u> <u>른</u> <u>소</u> <u>상</u> <u>공</u> <u>인</u> <u>에</u> <u>한</u> <u>한</u> <u>다</u> <u>.</u></p> <p>9. (현행과 같음)</p>